

## 보험계약대출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해당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대출 약정서가 적용됩니다.

### 보험계약대출 이자율

#### • 보험계약대출금리 적용방식(금리 및 변동여부)

(1) 고정형 : 보험계약을 가입했을 때 결정한 금리가 대출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이자율변동방식
보험계약의 예정이율 (또는 상품평균 공시이율)	1.90%	변동 없이 만기까지 고정

2) 변동형 : 대출기간 동안 일정주기마다 대출금리기준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이자율변동방식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1.50%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변동주기에 따름

#### • 보험계약대출금리 결정(변동)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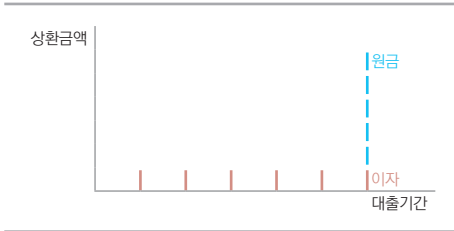
- 보험계약대출금리는 보험상품별 부리이율 및 가산금리로 산정됩니다.
- 보험상품별 부리이율은 금리확정형(고정)은 예정이율(또는 상품평균 공시이율)을, 금리연동형(변동)은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는 업무원가율, 목표이익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 보험계약대출과 무관한 비용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대출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보험계약의 만기일까지입니다.

### 대출상환방법

#### • 만기일시상환



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

대출원금은 만기일자에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기간 내에 계약자는 언제든지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즉시변제

(1)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야 합니다.

단, 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 ②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초과할 때
- ③ 보험계약이 미납해지되어 부활 청구기간이 경과될 때

(2) 제 1항 2호, 3호의 경우에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해지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대출자는 초과분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4) 보험계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되며,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감됩니다.

## 보험계약대출 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부담금액

- 인지세 - 고객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각 50%)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세 부담액	인지세액	고객부담	회사부담
5천 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이하	₩70,000	₩35,000	₩35,000
10억원 이하	₩150,000	₩75,000	₩75,000
10억원 초과	₩350,000	₩175,000	₩175,000

## 신용 정보에 미치는 영향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고시 제 2019-33호)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실행될 경우 대출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전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되며(2019.7.10.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계약대출만 해당) 신용정보회사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 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을 위한 대출지급액, 상환액, 이율 등 정보가 제공되며, 이자 납입여부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을 말함)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보험계약대출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청약철회의 의사를 서면등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 사실을 지체없이 당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당사 콜센터(1588-989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ia.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에 관한 사항

- 금융회사가 아래와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임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 받지 않은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대출은 담보권 설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체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대출은 이자납부일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미납이자를 보험계약대출금에 가산할 수 있으며, 그 합산된 금액에 보험계약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이용 관련 제한사항) 보험계약대출은 신용평점하락, 연체정도가 등록에 따라 해당 제도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